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8.

발 의 자 : 윤상현 · 곽규택 · 김대식
이헌승 · 최보윤 · 김선교
고동진 · 임종득 · 박수민
주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·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.

그런데 국민의 생명,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, 퇴직 공무원 중 의료인력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도록 함(안 제50조제2항 신설 등).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3호 중 “제50조제3항”을 “제50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인 (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)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을 전부 지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금 지급정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의료인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미납금의 공제지급)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.	제38조(미납금의 공제지급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	3. 제50조제4항----- -----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제50조(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의 지급정지)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. 다만,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	제50조(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의 지급정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액(이하 “근로소득월액”이라 한다)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,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② · ③ (생략)

④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

제4항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인(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)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을 전부 지급한다.

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⑤ 제4항-----

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 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----- ----- -----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